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장기재직공무원 및 성과·격무부서 직원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제23조(특별휴가) 제11항 및 제12항 신설
○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특별휴가 5일
○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특별휴가 10일
○ 성과·격무부서 표창 수여 공무원 : 특별휴가 3일

4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제7조의3(특별휴가)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5. 검토내용

○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장기재직공무원 및 성과 격무부서 직원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